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1회 임시회 2016.10.14. (금)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



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475 2016. 10. 14.(금) 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정영수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6년 09월 27일

다. 회부일자: 2016년 09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16년 10월 10일 (제351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워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윤홍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.

나. 주요내용

- 1)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(안 제3조)
- 2) 대안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3)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김덕환)

- 가. 본 조례안은 공립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, 공립대안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에 목적을 둔 것으로,
 - 나. 우리 사회에서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좀 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, 청소년 우울과 불안,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고위험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,
 - 다. 기존의 획일적 체제의 학교가 아닌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으로 현행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·개선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하는 공립대안학교 운영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,
 - 라.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적 효과 창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이번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대안교육"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, 활동,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공립대안학교"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,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하여 법 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대안교육사업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·보급

- 2. 소질 · 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3.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
- 4.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
- 5.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예산) 교육감은 제5조의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

■ 초중등교육법

- 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2.3.〉
 - 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 - 2. 학업 중단 학생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6.2.3.〉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〈신설 2016.2.3.〉
 -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6.2.3.〉
 -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6.2.3.〉
 [전문개정 2012.3.21.]
- 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

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"대안학교"라한다)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, 제23조제2항·제3항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, 교육과정, 수업연한, 학력인정, 그 밖에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3.21.]

■ 초중등교육법시행령

-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(이하 "학습부진아등"이라 한다)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. 〈개정 2016.8.2.〉
 -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8.2.〉
 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20., 2013.3.23., 2016.8.2.>
 - 1.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·복지·문화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 - 2.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·상담·치유·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 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,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〈신설 2010.12.27., 2013.3.23.〉

-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(熟廬)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수 있다. 〈신설 2013.10.30.〉
-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, 숙려 기간, 숙려 기간 동안 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,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,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〈신설 2013.10.30.〉

-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6.8.2.〉
 - 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
 - 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
 - 3. 연수의 종류
 - 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
 - 5. 연수의 이수기준
 - 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
-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〈신설 2016.8.2.〉
 - 1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- 2. 학습부진아등의 판별・진단・지도・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 - 3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[제목개정 2013.10.30.]

■ 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13조(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)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 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의무교 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 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,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내용

- 재정수반요인
 - ·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

2. 비용추계

-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916,93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- 이는 청명학생교육원 운영 예산이 학교회계(교육비특별회계)로 전환되면 서 이에 맞춰 추계된 예산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
대안교육사업 교육공무직인건비	356,823	360,000	365,000	370,000	375,000
대안교육사업비	346,659	346,659	346,659	346,659	346,659
교육비특별회계	213,454	213,454	213,454	213,454	213,454
계	916,936	920,113	925,113	930,113	935,113

3. 작성자 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전병성 (290-2265)